



고용노동부

## 고용노동부

수신 1,000대 건설사 대표이사  
(경유)

제목 건설현장 주말·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 안내

---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지난 3년간('18~'20년)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주말·휴일에 위험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전체의 22.3%를 차지하는 실정으로,
  - 떨어짐·맞음·깔림 등의 사고가 혹서기가 끝나는 8~10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  - \* '21.7월에는 주말·휴일 사망사고가 8건(34.8%) 발생
3. 주말·휴일에는 현장 관리감독 기능의 약화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 되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  - \* 관리감독자 등이 당해 현장에 없는 상태가 다수(당직의 형태로 일부 근무 → 근로자 긴장감 저하 등)
4. 이에 따라, 건설사에서는 가급적 주말·휴일에는 위험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주시길 요청드리며,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작업 전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\* 건설현장별로 공사금액 120억 이상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, 50억~120억 미만은 안전보건공단(관할 지역본부/지사 등)으로 제출
5. 우리부는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주말·휴일 등 관리수준이 불량한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을 실시,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<문의처> 고용노동관서: 지방청(경기지청 포함)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, 지청은 건설산재지도과(해당 과가 없는 곳은 산재예방지도과)

안전보건공단: 지역본부 또는 지사 건설안전담당부서. 끝.



고용노동부장관

---

주무관 **이승철**      공업사무관 **박현건**      건설산재예방 전결 2021. 8. 13.  
정책과장 직무 **김정수**  
대리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재예방정책과-459 (2021. 8. 13.)      접수

우 30117     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, (어진동, 고용노동부)      / 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

전화번호 044-202-8940      팩스번호 044-202-8094      / [sc1227@korea.kr](mailto:sc1227@korea.kr)      / 비공개(5)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

# 건설현장 주말·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 안내

건설현장의 안전 관리감독 기능이 취약\*한 주말·휴일작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기대책을 시행합니다.

\* 최근 3년간('18년~'20년)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22.3%가 주말·휴일 작업 중 발생  
특히 8월(12.8%), 10월(10.6%)에 다발

## 안내 사항

주말·휴일 위험공사는 가능하면 **진행하지 않도록** 하고, 부득이 공사를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에 따라 **작업계획서를 제출**

###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현장

-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(공동도급 현장은 주관사에서 제출)

###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업

-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공사\*를 주말·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

\* ①타워크레인 설치·조립·해체작업<고위험작업>,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<고위험작업>,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<고위험작업>, ④2미터 이상 굴착작업, ⑤터널굴착작업, ⑥교량(높이5미터 이상 또는 최대지간길이 30미터 이상)작업, ⑦채석작업, ⑧건물 등 해체작업, ⑨중량물 취급작업<고위험작업>

### 작업계획서 작성내용(뒷면 양식활용)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은 자유양식으로 작성·제출
- 해당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·장비, 관리자(현장소장, 관리감독자 등) 배치 현황
-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시 비상대응체계

### 작업계획서 제출방법(해당 작업일 2일 전까지 제출)

- (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) 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\*  
\* 지방관서의 경우 7개청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, 지청은 건설산재지도과, 지청에 건설산재지도과가 없는 경우는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
- (총 공사금액 50억~120억원미만) 현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건설담당부서

### 시행기간

- '21. 8. 30 ~ 10. 31

\* 사고사망 발생경향 분석 후 시행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

# 주말·휴일작업 안전작업계획서 양식

※ 양식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



현 장 명			시 공 사	
소 재 지				
공 사 기 간		공사금액	백만원	
위 험 작 업	<input type="checkbox"/> 타워크레인 설치·조립·해체작업<고위험작업> <input type="checkbox"/>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<고위험작업> <input type="checkbox"/>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<고위험작업> <input type="checkbox"/> 2미터 이상 굴착작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터널 굴착작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교량작업(높이5미터 이상 또는 최대지간길이 30미터 이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채석작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건물 등 해체작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량물 취급작업<고위험작업>			
기 타 작 업				
작업업체명(공정)		작업일시		
주말작업 입회 관리자 명단	구 분	성명(연락처)		
	현장소장			
	안전관리자			
	협력사 현장소장			
	관리감독자			
투 입 장 비				
사고시 비상대응체계				
작업내용		안전대책		

2021. . .

작성자: (서명)

확인자: 현장소장 (서명)

※ 다운로드 방법 :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- 사업소개 - 건설안전 - 건설안전자료실

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4] <개정 2021. 5. 28.>

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(제38조제1항관련)

작업명	사전조사 내용	작업계획서 내용
1. 타워크레인을 설치·조립·해체하는 작업	-	가.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. 설치·조립 및 해체순서 다. 작업도구·장비·가설설비(假設設備) 및 방호설비 라.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.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
2.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	-	가.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.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
3.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	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,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	가.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.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.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
6. 굴착작업	가. 형상·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. 균열·함수(含水)·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.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.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	가. 굴착방법 및 순서, 토사 반출 방법 나.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.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·보호대책 라.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.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층계획 바.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.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련된 사항
7. 터널굴착작업	보링(boring)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·출수(出水)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·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	가. 굴착의 방법 나. 터널지보공 및 복공(覆工)의 시공 방법과 용수(湧水)의 처리방법 다.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
8. 교량작업	-	가. 작업 방법 및 순서 나. 부재(部材)의 낙하·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.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.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·사용·해체 시 안전성 검

		<p>토 방법</p> <p>마.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, 작업방법</p> <p>바. 작업지휘자 배치계획</p> <p>사.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련된 사항</p>
9. 채석작업	<p>지반의 붕괴·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·지질 및 지층의 상태</p>	<p>가.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</p> <p>나.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</p> <p>다. 굴착면 소단(小段: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)의 위치와 넓이</p> <p>라.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</p> <p>마. 발파방법</p> <p>바. 암석의 분할방법</p> <p>사. 암석의 가공장소</p> <p>아. 사용하는 굴착기계·분할기계·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(이하 "굴착기계등"이라 한다)의 종류 및 성능</p> <p>자.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</p> <p>차. 표토 또는 용수(湧水)의 처리방법</p>
10. 건물 등의 해체작업	<p>해체건물 등의 구조, 주변 상황 등</p>	<p>가.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</p> <p>나. 가설설비·방호설비·환기설비 및 살수·방화설비 등의 방법</p> <p>다. 사업장 내 연락방법</p> <p>라. 해체물의 처분계획</p> <p>마. 해체작업용 기계·기구 등의 작업계획서</p> <p>바.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</p> <p>사.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련된 사항</p>
11. 중량물의 취급 작업	-	<p>가.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</p> <p>나.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</p> <p>다.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</p> <p>라.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</p> <p>마.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</p>